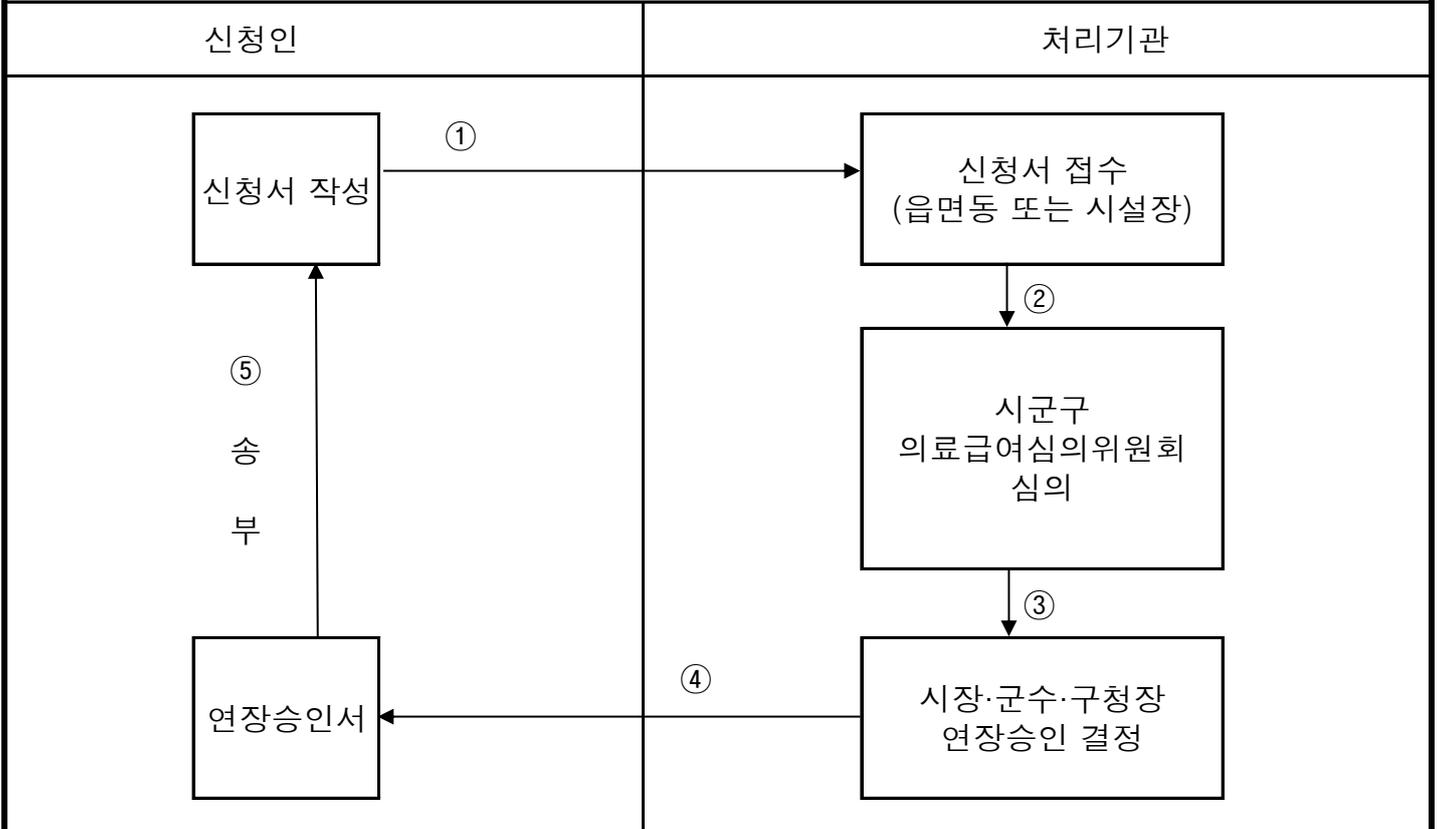


시설장 의견서

시설장 (인)

※ 시설장 의견서에는 건강상태, 의료이용실태, 생활실태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.

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신청 · 승인 절차



1. 연장승인일수는 만성고시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그 외 기타질환 수급권자는 1회당 90일 이내에서 시군구가 승인합니다.
2. 신청서는 자신의 주된 상병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1부를 보장기관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수급권자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'군'지역의 경우 관할군청에서도 연장승인신청서 접수 가능
3. 급여상한일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
4. 급여연장승인신청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.
5. 만성고시질환(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)
 - ① 정신 및 행동장애(뇌전증포함)(F00-F99), ② 신경계질환(G00~G37, G43~G83)
 - ③ 고혈압성 질환(I10-I15), ④ 간의 질환(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)(B18, B19, K70~K77), ⑤ 당뇨병(E10-E14)
 - 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(J44), ⑦ 대뇌혈관질환(I60-I69), ⑧ 두 개내손상(S06), ⑨ 갑상선의 장애(E00~E07)
 - ⑩ 심장질환(I05~I09, I20~I27, I30~I52) ⑪ 뇌전증 (G40~G41)